

창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20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창원시가 발주한 C산업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다. 최초 계약서는 2017. 11. 6.경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는 내용이었고, 위 계약서 작성 직후 원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11,324,751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하도급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12월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E에 당초 공사금액보다 감액하여 준공금 296,465,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D의 직원 F는 2018년 1월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준공금정산합의서(갑 제9호증)를 첨부하여,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296,465,000원과 원고와 D간에 합의된 준공금 150,140,249원의 차액인 133,022,501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팩스전송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8. 1. 4.부터 2018. 3.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운영자 G은 D 대표이사인 피고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가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G은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이익이 생기면 피고에게 수수료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후 원고는 D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E이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의 주선으로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 피고가 G에게 연락을 하여 수수료를 급히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익이 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지만 피고가 강하게 독촉해 마지못해 피고에게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처리비용으로 32,594,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이 생기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원고의 이익에 반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G은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대금의 40%가 넘을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원고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